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 립 의 각 급 학 교 에 두 는
공 무 원 의 정 원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2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30명, 조교 2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영양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대학생 전문 심리상담 제공 및 감염병 관리 등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22명(전문경력관 나군 19명, 8급 2명, 수의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5. ~ 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405”를 “26,561”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209”를 “20,343”으로 하며, 대학 계 “18,394”를 “18,526”으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525”를 “15,655”로 하며, 조교 “2,832”를 “2,834”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0”을 “82”로 하며, 영양교사 “28”을 “29”로 하고, 전문상담교사 “2”를 “3”으로 하며, 일반직 계 “6,196”을 “6,2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115”를 “6,118”로 하며, 전문경력관 “63”을 “8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26,405</u>	<u>26,561</u>	+156
교육공무원 계	<u>20,209</u>	<u>20,343</u>	+134
대학 계	<u>18,394</u>	<u>18,526</u>	+132
·	·	·	
교수 · 부교수 또는	<u>15,525</u>	<u>15,655</u>	+130
조교수			
조교	<u>2,832</u>	<u>2,834</u>	+2
·	·	·	
·	·	·	
각급 학교에 두는	<u>80</u>	<u>82</u>	+2
보건의료 등 계			
·	·	·	
영양교사	<u>28</u>	<u>29</u>	+1
·	·	·	
전문상담교사	<u>2</u>	<u>3</u>	+1
·	·	·	
·	·	·	

일반직 계	<u>6,196</u>	<u>6,218</u>	+2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15</u>	<u>6,118</u>	+3
전문경력관	<u>63</u>	<u>82</u>	+19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7